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조감도**

목 차

■ 건설관련 소식 1	■ 지식정보 12
- 홍준표-폭스사 등과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MOU 체결	-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에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활기----- 글로벌 테마파크 영향	- 건설공사 안전관리, 시공자에게만 미룰 일이 아니다.
- 경남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격 개선' 노력 빛나다	- 양로원, 고아원, 전통시장 등에 대한 정부 무상 안전 점검 실시
- 경남도, 아파트 관리비 비리 척결 연중 실시	- 국토부,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불만민원 적극 해소
- 경남도, 안전 위협하는 도로구조 바로 잡는다.	- 주택임대사업자, 규제는 줄고 혜택은 늘어난다
- 경남도, 재해위험지구 해소를 위한 정비 박차	- '짖은 도로굴착' 없애 생활불편 낭비 줄인다!
- 경남도,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확대 추진	- 역주행·결빙구간 알려주는 '똑똑한 고속도로'
- 경남도, 낙동강 준설선 관리실태 일제점검 실시	- 과적화물차 "이동식 단속 늘리고 과태로 상향"
- 경남도 '도민행복주택' 제4호 탄생	- 똑똑한 신호등! 불필요한 신호대기 사라진다
- 경남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당초 계획대로 순항	■ 배워서 남주 者 23
- 경남도, 태풍 제12호 "나크리" 복상 대비 비상체제 돌입	■ 최신법령 및 법령해석 30
- 홍준표 도지사, 거제 해양플랜트산단 예정지 현장 방문	■ 신기술 정보 39
- 홍준표 도지사, 밀양 나노융합산단 예정지 방문	■ 건설기술심의 및 계약심사 현황 41
- 홍준표 도지사, 진주·사천 항공국가산단 조성 예정지 현장 방문	■ 기술인 나눔 정보 42
- 창원시, 버스승강장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설치	

홍준표-폭스사 등과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3자간 MOU 체결

- ▶ 16일 서울에서 경남도, 폭스 컨슈머 프로덕트, 빌리지 로드쇼 MOU 체결
- ▶ 2018년 개장 목표로 진해에 세계적인 테마파크 및 리조트를 개발하기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의 외신기자클럽에서 제프리 갯식 폭스 컨슈머 프로덕트 사장 및 팀 피셔 빌리지 로드쇼 사장과 함께 3자간 MOU 협정서를 체결한다.

이번에 조성하게 될 테마파크는 한국 최초의 세계적인 테마파크와 리조트로 부산진해 경제구역청 내 웅동지구 일원에 들어서게 된다.

협정 당사자인 폭스 컨슈머 프로덕트는 세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 하나인 빌리지 로드쇼를 운영 파트너로 정해 진해 웅동 일원에 세계적인 테마파크 및 리조트를 개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세기 폭스사는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단지(283만㎡)내에 303천㎡ 이상 규모의 테마파크를 개발하여 영화 및 TV 브랜드를 완벽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의 개장 목표는 2018년 하반기로, 35억불을 투자하여, 폭스 브랜드 테마파크, 영화관, 프리미엄 아울렛, 콘도미니엄, 18홀 골프코스, 6성급 호텔, 카지노, 해양레포츠(워터파크 포함) 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번에 협정서에 서명한 빌리지 로드쇼 테마파크는 경상남도과 20세기 폭스사와 함께 테마파크의 기획, 디자인, 개발, 운영을 맡게 된다.

그동안 홍지사는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지난해 9월 미국에 건너가 20세기 폭스사 등 주요 투자자들을 만나 직접 투자환경 소개를 하였으며, 또 지난 6월 20일 미국을 건너가 폭스 스튜디오에서 폭스 브랜드의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도는 글로벌 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연 1천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100개 이상의 제조업체를 유치하는 효과와 같은 10,000명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오늘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테마파크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힘찬 첫발을 내딛었다”며, “앞으로 폭스, 빌리지 로드쇼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하여 성공적인 글로벌 테마파크 개발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폭스사 제프리 갯식 사장은 “한국은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및 아시아 전역에 걸쳐 급증하는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세계적 테마파크를 위한 특별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20세기 폭스 컨슈머 프로덕트 소개

20세기 폭스 컨슈머 프로덕트는 동 산업계의 리더로서 20세기 폭스 필름, 20세기 TV 및 폭스 브로드캐스팅을 대신하여 제3자 회사로서 세계적으로 동 회사의 자산에 대한 라이선싱 및 마케팅을 하는 회사임. 동 분야는 각 방송국에 프라임 타임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래밍을 제공하는 최고의 공급자인 20세기 폭스 TV와 연계되어 있다.

※ 빌리지 로드쇼 소개

세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기업인 빌리지 로드쇼의 자회사인 빌리지 로드쇼 테마파크는 호주, 미국 및 중국에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 자료 : 도 투자유치단 해인기업담당
(055)211-3142



부산진해 경제지역구역 남문지구 활기 글로벌 테마파크 영향

- ▶ 미국 폭스사와 MOU 체결 전후비교, 남문지구 분양률 20% 급등
- ▶ 21일, 홍지사 실국원장 회의 시 간부들에게 도의회와 협력관계 주문



《글로벌 테마파크 조감도》

홍준표 도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주변 개발 대상지가 벌써부터 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21일 도지사 주재 실국원장 회의 시 홍지사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남문지구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일원) 분양실적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정연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21일 경남도에 따르면, 미국 폭스사와 MOU를 체결하기 전인 지난 6월 15일 기준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는 전체 분양률은 34.5%였다.

그런데, 지난 6월 20일 홍지사가 미국을 건너가 폭스 스튜디오에서 폭스 브랜드의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난 이후 시점인 지난 7월 10일 기준으로 분양률은 54.7%다

이같이 짧은 기간 내에 용지 분양률이 20%가 급등한 배경에는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 계획이 한 몫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다.

용지 분양 내용을 보면,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 계획 발표 전에는 공동주택용지 분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가, 발표 후 38.7% 분양되었고, 단독주택용지는 74.9%에서 85.5%로, 상업용지는 61.8%에서 93.1%로, 근린생활용지는 41.2%에서 73.1%로 급등했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진해 웅동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 관련 MOU 체결 이후 남문지구에 대한 토지 분양 문의가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남문지구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 예정지인 웅동지구와 인접한 지구다.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는 1단계 사업을 2008년 8월에 착공하여 2013년 9월말에 준공하였고, 2단계 사업은 올해 6월에 공사가 마무리 되었다.

남문지구의 전체 면적은 108만㎡로(주택용지 27.9만㎡, 공공용지 56.4만㎡, 산업용지 18.6만㎡, 상업용지 5.7만㎡)로 총사업비 3,478억 원이 투입되었다.

한편, 홍준표 도지사는 이날 실국장원장 회의 시 도의회와의 협력관계를 특별히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 시 홍지사는 “도의회가 새로 구성이 되어서 생소할지도 모르니, 도의원들이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도청 간부들이 가서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기를 바란다” 며, 이어 “언론보도가 이르다 싶으면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비공개 보도를 요청하더라도 모든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해라”고 지시했다.

■ 자료 : 도 공보관실 보도지원팀당
(055)211-2074



경남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격 개선' 노력 빛나다

▶ 24일 정부 3.0 우수사례 홍보콘텐츠 경진대회 안전행정부 장관상 수상



경남도는 지난 24일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열린 '정부 3.0 우수사례 홍보콘텐츠 경진대회'에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격 개선' 시책이 안전행정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 중앙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했으며, 동영상·인포그래픽·포스트·웹툰 등 다양한 분야에 총 520여 건이 제출되었다.

제출된 응모사업에 대해 안전행정부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상 1건, 국무총리상 2건, 안전행정부 장관상 3건이 선정되었다.

주요 수상내역은 대통령상에는 관세청의 '수입 가격공개', 국무총리상에는 경찰청의 '도로위험 상황 예보시스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운전 면허증 발급 간소화', 안전행정부 장관상에는 경남도의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개선', 문화재청의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고양시의 '공공시설 개방정보'이다.

경남도는 건축부서와 세무부서의 협업을 통해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가 인하 효과를 가져오는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개선'을 응모하였으며, 광역지자체로는 유일하다.

이번에 공모한 사업은 분양사업자의 부담 이득금 원천 차단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분양 전환가격 실질적 인하효과를 가져오는 시책으로, 경남도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해오고 있다.

김경일 경남도 안전행정국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 도민의 행복을 위해 개방·공유·소통·협업의 정부 3.0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자료 : 도 행정과 공개협업팀당
(055)211-3234

경남도, 아파트 관리비 비리 척결 연중 실시

▶ 10개 시·군 56개 단지 122건 적발 행정조치

경남도가 아파트 관리비 횡령, 불법 수의 계약 등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비리와 부조리를 타파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확보 대책’의 중간 점검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경남도는 6월말까지 창원, 사천, 거창 등 도내 아파트 26개 단지에 대해 조사·점검하여 총 1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분야별로는 ▲공사·용역 분야 28건, ▲관리비 등 예산회계분야 34건,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분야 15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분야 8건, ▲관리주체 분야 15건, ▲기타 22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리비 부당집행액은 환수하고, 사업자 선정지침 등 법령 위반사항 7건은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아울러,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과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위반 관계자는 사항의 경중에 따라 사법 기관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도정2기 경남發 혁신과제 중 ‘정의와 공정을 위협하는 잘못된 관행과 편법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당초 6월말로 계획한 조사·점검을 연말까지로 연장하여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통영, 김해 등 8개 시·군에서 30여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조사·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공사·용역분야는

▲입찰 공고 없이 공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수의계약, ▲잡수입에서 공사비 지출 등이 있었고,

예산·회계분야에서는 ▲관리규약과 다른 관리비 부과, ▲잡수입 집행 및 회계처리 부적정, ▲회계증빙서류 미첨부 등의 위반사례가 있었다.

또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시설보수,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수당 지출 부적정 ▲업무집행 시 미신고 직인 사용,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시 주민의견절차 미이행 등을 적발했다.

지영오 경남도 건축과장은 “이번을 계기로 아파트의 부조리와 갈등구조를 차단하고 입주민이 신뢰하는 행복한 아파트가 되길 기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관내 아파트 단지에 점검사례를 알려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위법사항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법규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자료 : 도 건축과 주택관리담당
(055)211-4435



경남도, 안전 위협하는 도로구조 바로 잡는다.

- ▶ 21일부터 지방도 차선폭 협소지역 등 일제조사 실시
- ▶ 정비사업 추진으로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 동시 확보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7월 21일부터 8월 8일까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내 지방도를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도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남도, 시·군 도로부서, 관할 경찰서가 협조하여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도로관리사업소는 5개 점검반으로 도내 전체 지방도 2,414km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차선폭이 좁거나 도로구조가 불량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구간에 대해 긴급 보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도로의 유지보수는 운전자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번 도로점검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강병철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소장은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 자료 : 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담당 (055)254-4153



경남도, 재해위험지구 해소를 위한 정비 박차

경남도는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을 통해 도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말까지 전체 231개소 중 153개소를 정비 완료하였다.

나머지 78개 위험지구 중 올해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33개소이며, 45개소는 2015년부터 정비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는 1997년부터 2020년까지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연차별 투자되고 있으며, 총사업비 1조 5,353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9,170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매년 700~8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정비 중에 있다고 덧 붙였다.

특히 금년에는 국고보조율이 60%에서 50%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는 중앙부처로부터 특교세 등 132억원을 확보함으로써 33개 지구에 예년수준의 7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정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도는 기존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정비뿐만 아니라 추가로 올해 24개소를 새로 지정하는 등 재해위험요인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경남도 하일선 치수방재과장은 “앞으로도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미정비 중인 지구는 상시 예찰을 통해 재해예방토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자료 : 도 치수방재과 복구지원담당 (055)211-4197



경남도,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확대 추진

- ▶ 7월 22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추가로 123만㎡ 확대기로 의결
- ▶ 조선 외 해양플랜트 설비 생산을 위한 전용 공간 추가 확대 가능

경남도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신청한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변경계획이 기본 계획에 원안대로 반영되었다고 23일 밝혔다.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해양수산부 산하에 있으며, 연안통합관리계획, 공유수면매립기본 계획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22일 열린 심의회에서 사업기간을 당초 2007년부터 2015년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2018년까지 연장하였으며, 면적도 265만㎡에서 388만㎡으로 늘어나 123만㎡가 더 늘어나게 되었다.

지구별로는 고성 동해면의 내산지구 22만 7천㎡, 장좌지구 100만 4천㎡ 늘어 난 것이다.

이로써, 조선기자재 및 중소형 선박 건조에 국한되어 있던 것을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 설비 생산에 필요한 전용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경남도에 따르면 오는 8월에 해양수산부에서 매립기본계획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할 계획이며, 내년 8월에 경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로부터 일반산업단지 변경계획을 승인 받아 2018년 말에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번에 열린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여부가 사업성공의 최대 난관이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등을 대상으로 계획 변경의 필요성, 당위성 개발에 주력했다.

홍준표 도지사도 평소에 담당부서를 통해 연내 특구 변경 승인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으며, 남해안 조선해양플랜트 글로벌허브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특구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박달호 경남도 성장동력과장은 “2020년을 목표연도로 설정, 3조2천467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8천764억 원의 부가가치효과 9천900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자료 : 도 성장동력과 조선해양담당 (055)211-2735



경남도, 낙동강 준설선 관리실태 일제 점검 실시

▶ 우수기 낙동강 준설선 침몰 및 수질오염 피해 사전 예방

경남도는 우수기 낙동강 내 정박 중인 준설선의 침몰 및 표류로 인한 수질오염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시·군 관계 공무원과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낙동강 계류장에 정박 중인 준설선 25척(구조조정대상 준설선 7척, 구조조정 비대상 준설선 18척)이 대상이었으며, 선박에 대한 결박 및 정박 상태, 선박내 유류 등 오염물질 제거 유무, 선주 및 관리자(선장)와의 비상연락망 구축 상태 등 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결박 및 정박 상태 등 전반적인 관리 상태가 양호하고, 위험 상황 발생을 대비한 선주 및 관리자(선장)와의 비상연락망도 구축되어 있었다.

밀양 삼랑진교 주변과 김해 상동 계류장 등에 침몰한 4척의 준설선은 인양 전까지 낙동강 유역청 현장 감시원이 상주하여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준설선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재해예방을 위해 상시 점검을 하고 지적 사항을 관리할 계획이다.

일제 점검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우수기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주 계도 공문 발송, 무허가 준설선이 있는 시·군에 반출 또는 점용허가 통보, 구조조정 후 반출되지 않고 정박 중인 준설선은 해체나 반출이 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협조 요청하였다.

경남도 이채건 건설방재국장은 “구조조정 완료 후 정박 중인 선박은 조속히 해체 또는 반출하고, 침몰 준설선은 방치시 이전 제거 명령과 고발 조치 등의 강력한 행정체제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 자료 : 도 치수방재과 낙동강기구기담당 (055)211-3925



경남도 ‘도민행복주택’ 제4호 탄생

▶ 경남도-덕진종합건설-LH공사 합작 지원

경남도는 도내 저소득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한 제4호 ‘도민행복주택’이 탄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준공한 도민행복주택은 창원시 진동면 소재 다문화가정인 박재운 씨에게 제공되었다.

‘도민행복주택’사업은 조손가정, 편부부가정,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등 저소득 도민의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10년간 30곳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도 경남도는 ‘도민행복주택’ 제5-6호를 김해 주촌과 창원 경화동의 친인척위탁가정에 지원하게 된다.

이날 ‘도민행복주택’ 제4호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 경남도, 진동면, 덕진종합건설, LH공사, 어린이재단경남지역본부, 창원시 마산 다문화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기념 현판을 부착했다.

이번에 도민행복주택을 기증받은 박재운 씨는 “‘도민행복주택’을 지원해 주신 경남도와 관계 기관에 정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영오 경남도 건축과장은 “‘도민행복주택 사업’은 저소득 도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며, “사업의 확대를 위해 주택건설업체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면서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민행복주택사업을 위해 경남도는 행정지원을 맡고, 덕진종합건설은 주택 전면 개보수를, LH공사는 생활가전제품을 기증하고 있다.

■ 자료 : 도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055)211-4413



경남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당초 계획대로 순항

- ▶ 현재 4개 기관 완료, 내년 연말 7개 공공기관 이전 완료 예상
- ▶ 계획인원 3,574명으로 가족 포함하면 1만명 이상 이전 예상

경남도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지역의 성장거점을 구축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경남진주혁신도시의 완공 목표가 올해 연말이며, 현재 공정율이 98%라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기반 녹색첨단도시로 조성되어, 인구 3만8천명이 거주할 경남진주혁신도시에는 올해 7월까지 중앙관세분석소 등 4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7개 기관은 내년 연말까지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본사 이전대상 계획 인원은 3,574명으로 가족까지 포함하면 1만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4개 기관 1,057명이 이전하여 30% 이고, 나머지 2,517명이 이전하는 내년 말이면 계획인원 전원이 이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주시가 실시한 경남진주혁신도시 기본구상 수립 용역결과에 따르면, 이전기관과 지역전략 산업의 연계 강화로 지방세수 증가 300억원, 지역경제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 2조 6천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 1천억원, 고용유발효과 3만 1천명 등의 지역 경제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경남도는 도내 대학생 채용 확대를 위해 공무원을 공채로 채용하는 중앙관세분석소를 제외한 10개 공공기관과 협약체결을 완료하였다.

그 결과, 한국남동발전은 고용창출의 경우 도내 경력단절여성 등 120명 정도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와 정규직 신입채용자 9%(15명 정도)를 경남에 할당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고졸출신 40명 정도를 별도 채용할 계획이다.

경남도 이삼희 공공기관이전단장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생활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며, “이어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이전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자료 : 공공기관이전단 혁신도시개발담당 (055)211-6473



경남도, 태풍 제12호 “나크리” 복상 대비 비상체제 돌입

▶ 도지사 태풍대비 철저 특별지시

경남도는 제12호 태풍 나크리가 북상함에 따라 31일(목)부터 보강단계에 들어갔으며, 8월 1일(금)부터는 비상 1단계 근무체제로 강화될 예정이다

제12호 태풍 “나크리”의 최대풍속은 27m/s, 중심기압은 985hpa, 강도는 중간이며 크기는 중형 태풍으로서 8월 4일(월)에 서해안을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의 일부 해안과 내륙지방에는 호우와 강풍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13개 협업부서와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였으며, 태풍 경로 추이에 따라 현재의 보강단계를 1단계 비상체제로 격상할 계획이다.

또한 기상정보 상황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한 단계별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하였으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골든타임 매뉴얼을 적용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의 최소화하고 피해 시설에 대해서는 민·관·군 합동으로 신속히 복구할 계획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나크리 북상에 따른 기관장 정위치 근무와 비상연락망 유지, 피해 예방을 위한 재해취약시설 사전 점검을 지시”하면서, “도민들의 외출자제와 내집 앞 축대 등의 점검을 당부”했다.

■ 자료 : 도 치수방재과 복구지원담당 (055)211-4193



홍준표 도지사, 거제 해양플랜트산단 예정지 현장 방문

▶ 국가산단 지정 위한 대응책 점검 등 관계자들에게 적극적 사업추진 당부



4일 홍준표 도지사는 거제 사등면 사곡리 일원 거제 해양플랜트산단 개발 예정지를 방문했다.

홍지사의 이번 방문은 2기 도정의 중심축인 경남미래 50년 사업에 도정을 집중시켜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지정과 도가 추진 중인 해양플랜트 산업 육성에 한층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홍지사는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를 둘러보며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국토부와 LH(토지주택공사)의 평가에 대비해 해양플랜트기업에 대한 입주수요 확보, 저렴한 용지공급방안 등의 대응책을 점검했다.

아울러,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해양플랜트 산단이 국가산단으로 최종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그간 경남도와 거제시는 해양플랜트 국가 지원 특화산단이 국가산단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LH와 산업단지 면적, 입주기업 확보, 분양가 인하, 등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현재 경남도와 거제시는 해양플랜트 국가지원 특화산단에 입주할 기업을 대상으로 실수요 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4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5월 거제시청에서 각각 관련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5월 설명회 이후 실수요조합 가입 기업을 계속 모집 중에 있으며, 관련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문의가 있다고 도는 밝혔다.

모집은 9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다.

※ 기업입주문의 ☎ 055-639-3242 거제시 ☎ 051-501 -5003 부산강서산단(주)

향후, 경남도와 거제시는 사업 추진에 주체적인 행정, 실수요조합, 금융권 등을 묶은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을 오는 10월 경 설립할 예정이며, 2015년부터 산업단지계획승인 신청 및 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전력을 쏟고 있다.

■ 자료 : 도 성장동력과 조선훁양담당 (055)211-2733



홍준표 도지사, 밀양 나노융합산단 예정지 방문

▶ 3일 밀양 나노융합 국가지원산단 예정지 방문, 산단 조성 적극적 추진 당부



3일 홍준표 도지사는 경남미래 50년 동부권 핵심사업인 밀양 나노융합 국가지원산단 예정지를 방문했다.

경남도는 이번 방문이 지난 3월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선정된 도내 특화산업단지 중 첫 번째 현장 방문으로, 홍지사의 밀양 나노융합 국가지원산단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담은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2008년 342만7천㎡(104만평) 규모의 산업단지 지정을 요구한 이후 국토부, 산업부 및 국회 등에 산업단지 조성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나노융합 국가지원산단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홍지사는 도정1기부터 나노융합 국가산단 조성을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으로 선정하고, 23개 기업·연구기관과 상호협력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해 9월에는 밀양을 방문한 국무총리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지원을 약속 받기도 했다.

향후, 도는 밀양 나노융합산단이 국가산단으로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先분양을 위한

타 기업 대상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홍지사는 산단 예정지를 직접 둘러보고, 현황 청취와 함께 향후 추진계획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는 등 하반기에 있을 국토부의 국가산업단지 시행자 발표를 앞두고, 함께 자리한 밀양시장 등 관계자들에게 산단 조성에 적극적인 의지와 추진을 당부했다.

홍준표 도지사는 “국토부, LH 등 아직까지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다”며, “경남도와 밀양시가 상호 협력해 밀양 나노융합 국가지원산단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강조했다.

■ 자료 : 도 성장동력과 나노융합담당 (055)211-2743



홍준표 도지사, 진주시천 항공국가산단 조성 예정지 현장 방문

▶ 사천시 축동면 현장방문, 드리핑 청취 및 차질없는 추진 당부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는 9일(수)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이자 서부권 대개발의 핵심인 진주·사천 항공국가산단 조성예정지인 사천시 축동면 현장을 방문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진주·사천시장과 추진상 애로점 등 당면 현안사항을 논의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항공국가산단 조성 추진 상황을 직접 챙기면서 임기 내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을 완성, 경남도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홍준표 도지사의 의지를 담은 행보인 것으로 보인다.

민선6기 도지사 취임후 제일 먼저 미래 50년 먹거리 산업 현장을 둘러 본 홍지사는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인 항공산업발전의 주춧돌이

될 항공국가산단이 조성 될 때까지 중앙부처와 협조 등 행정력을 집중하여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하였으며,

그동안 6차례에 걸쳐 실시한 국가산단 입주 수요조사 결과 165만㎡이상의 입주수요를 확보하였으며, 진주·사천지역의 가용용지가 절대적 부족으로 포화상태임에 따라 항공기업체의 공장용지 확보 요청이 많으며 국가산단 지정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KAI 등 항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 기반 구축으로 항공우주 G7도약의 비전과 함께 항공국가산단 지정과 지역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 : 도 성장동력과 항공산업담당
(055)211-2725



창원시, 버스승강장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설치

창원시는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시민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내주요 노선의 기·종점과 주요 교차로 등의 버스승강장에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을 설치했다.

이는 원이대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5개 노선의 버스승강장에 226개의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 주요도로의 도로명과 위치 정보를 알 수 있는 기초번호가 표기되어 현재 위치를 쉽게 파악 할 수 있어 길 찾기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교통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앞으로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보행자용 도로명판과 건물이 없는 도로 구간에도 번호판을 설치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불편해소와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창원시 건축경관과(☎225-4391) 또는 관할구청 민원 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 자료 : 창원시 건축경관과
(055)225-4391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에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는 자본금 등록기준 혜택을 받아 더욱 쉽게 건설업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에 대한 자본금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금년 5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4(금)부터 8.13(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가 이미 등록한 업종 외의 다른 업종을 등록할 경우 **자본금 기준을 감면**받게 된다.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제재(과징금, 영업정지 등)를 받지 않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할 때 1회에 한하여 해당 업종의 자본금 등록기준의 50%를 면제해준다.

다만,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자본금 등록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면제된다.

* (예시1) A 업종(자본금 기준 2억)을 이미 등록한 건설업체가 15년 이상 영위하고 10년간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B 업종(자본금 기준 10억)을 추가 등록하고자 할 때, 1억원(A 업종의 50%)을 감면받아 자본금 9억원 충족 필요

* (예시2) C 업종(자본금 기준 4억)을 등록한 건설업체가 D 업종(자본금 기준 4억)을 추가 등록하는 경우 2억 원을 감면받아 자본금 2억 원 충족 필요

이번 조치로 5만 6천여개의 건설업체 중 약 10%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우수한 건설업체가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체*는 그 명단을 공표하기로 지난 5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에 개정된 하위법령에서 명단 공표 방법, 제외사유 등을 정하고 있다.

* 상습체불업자는 3년내 대금체불 등을 이유로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건설업체

상습체불업자 공표 명단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명단이 공표된다.

또한, 명단 공표 대상인 건설업체에게는 3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주게 되며, 체불된 공사대금을 완납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공표 제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상습체불업자의 명단을 공개하게 되면 건설업체들이 상습체불업자와 계약을 기피하게 되어 대금체불이 사전에 차단되고, 체불대금을 완납할 경우 공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체불대금의 조기 지급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저가로 낙찰된 공사는 하도급자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직접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지난 5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저가 낙찰 공사의 기준을 낙찰률 70%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낙찰률 70% 미만의 공공공사**는 하도급자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되며, 이로 인해 하도급대금 체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건설업체 조사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다.

*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중 시행령에 규정된 ‘휴업 등으로 등록말소시 일정기간 등록 금지’ 내용이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11월 15일에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이번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개정으로 **능력있는 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작년부터 지속 추진중인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에 대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044)201-3497

건설공사 안전관리, 시공자에게만 미를 일이 아니다

▶ 국토부, 모든 건설주체가 함께하는 「**건설 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17년까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7.24(목) 발표하였다.

※ ‘14. 7. 24(목) 15:30, 국가정책조정회의(주재 : 국무총리)에 보고·확정

이번 대책을 마련한 배경은 최근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고, 세월호 사고 등 연이어 발생한 대형 사고로 인해 안전이 국민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바, 거듭된 건설현장 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건설부문 안전사고를 대폭 감소**시키기 위해 **새로운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공자와 감리자에게만 의존해왔던 시공단계 중심의 안전관리체계에 **발주자와 설계자의 책임 및 역할을 추가**하고, 현행 시공단계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설계·착공·시공·준공단계를 아우르는 **건설사업 쉐 생애주기형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한다.

- 이를 위해 **발주자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을 총괄**하도록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지침**」을 ‘14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 **설계자가 설계단계부터 시공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로부터 설계목적물과 작업자들이 안전하도록 조치하는 **DFS***를 새롭게 도입한다.

* Design for Safety(영국) : 설계·기획단계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고예방 노력

- 또한 DFS 수행에도 불구하고 미 제거된 위험요소를 시공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하여 건설현장의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
 - ① (설계단계) 설계자의 DFS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설계도면 “사전안전성 평가”**를 도입하며,
 - ② (착공단계) 설계단계에서 미제거된 위험요소를 연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시공업체의 위험요소 관리 능력을 확인**하고,
 - ③ (시공단계) 건설주체 모두가 참여하는 **건설 안전 파트너링**을 통해 시공단계의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건설사고 취약공종의 위기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과학적 위험요소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 이와 더불어 규제와 벌칙으로 안전관리를 강요해 온 기존 대책의 정책효과가 미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주체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참여자인 발주청, 시공사, 감리자의 **안전관리 업무수행 역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연내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15년부터 시범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국토교통부는 건설재해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접근능력이 뛰어난 **고용노동부와 정보공유 등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 점검시 인지한 **불법하도급 사실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통보절차와 서식 등을 마련하고,

-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센터) 및 세움터의 **착공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고용노동부의 현장점검과 국고지원사업*이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3억원 미만 영세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교육, 안전보건시설 개선과 10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스템 비계 지원 등

- 더불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노출되어있는 소규모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공사 착공 신고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과 계약한 **기술지도* 계약서**(산업안전보건법)와 **안전관리계획서**(건설기술진흥법) 제출을 소규모 공사까지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 3억~120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부터 기술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이행률이 70%에 불과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롭게 도입하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국민행복의 기반인 안전한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1



양로원, 고아원, 전통시장 등에 대한 정부 무상 안전점검 실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7.15일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하여 국가가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7.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①사회복지시설, ②전통시장, ③농어촌도로 교량, ④지하도 및 육교, ⑤옹벽 및 절토사면 등 소규모 취약시설을 국가가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소규모 취약시설을 관리하는 주체 또는 해당 시설을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점검을 요청하면, 무상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점검 결과는 무상 안전점검을 신청한 관리주체 및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되어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의무 안전점검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규모 취약시설이 안전점검 관리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사고 발생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공동구, 항만외곽시설, 배수·빗물 펌프장** 등의 시설물이 2016년부터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포함되어 관리된다.

그동안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함에 따라, **공동구·방파제·방파호안·배수(빗물)펌프장**을 1종 및 2종시설물에 새롭게 포함하고, 2종 시설물 중 **도로터널·철도역사** 등 공공건축물·절토사면의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는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구분		1종2종 시설물(추가확대)
신규 추가	공동구	·공동구(2종 시설물)
	항만외곽시설	·연장 1,000m 이상의 방파제(1종 시설물) ·연장 500m 이상의 방파제·방파호안 등 (2종 시설물)
	배수·빗물 펌프장	·1종 수문·통문에 포함된 배수(빗물)펌프장 (1종 시설물) ·2종 수문·통문에 포함된 배수(빗물)펌프장 (2종 시설물)
범위 확대	도로터널	·연장 300m 이상의 지방도 ⇒ 연장 300m 이상의 지방도, 시·군·구도 터널(2종 시설물)
	공동주택 외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의 전시장 ⇒ 연면적 5천㎡ 이상의 전시장·일반 철도역사·공항청사·항만여객터미널 (2종 시설물)
	절토사면	·연장 200m 이상, 높이 50m 이상의 절토사면 ⇒ 연장 100m 이상, 높이 30m 이상의 절토사면(2종 시설물)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4



국토부,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불만민원 적극 해소

▶ 15건의 국민불편 유권해석 심의..., 11건 해소

(사례1) oo도 건축공무원은 화훼재배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화초를 판매 하면 판매시설로 보아 위법건축물이 된다고 건축주에게 설명하면서, 본인도 납득하기 어려우나 기존 유권해석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국토부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해석변경으로 민원이 해소되었다.

(사례2) K씨의 민원은 국토부 건축민원 위원회의 심의로 해결되었다. K씨는 건축물 옥상에 주차장 구획을 하면 바닥면적에 산정해야 한다는 구청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안 그래도 용적률이 부족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데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 하여 답답한 마음에 그냥 국토부에 한번 민원을 넣었는데 이렇게 잘 풀려 정말 다행스럽다.

금년 11월 29일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운영될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법령 시행에 앞서 시범 운영 중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에서 전향적인 유권해석을 적극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에 따르면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책임소재 등을 의식하여 그간 사회와 건축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전임자의 기존 해석을 그대로 답습 하는 회피성 법령해석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위원회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장일치로만 개선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당초 개선권고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그간 4월 이후 4차례의 시범운영 결과 15건을 심의하여 11건의 기존 해석을 변경 권고하는 등 기대 이상의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3인, 법률전문가 1인, 국토부 및 지자체 공무원 각 1인 등 총 6명으로 구성한다.

심의 안건은 사·도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부가 자체 발굴하기도 한다. 해당 민원인은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간 4차례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논의한 15건의 민원사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1건에 대하여는 기존의 경직된 **유권해석을 개선권고**하였다.

① 화훼재배용 하우스에서 자체 생산된 화초를 판매하는 시설은 현재 판매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부속용도로** 보기로 하였다. 또한 양계장에서 생산된 달걀을 판매하는 시설도 부속용도로 본다.

판매시설로 보면 입지가 불허되는 경우가 있으나, 부속용도로 해석하면 용도변경도 필요 없고 입지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② 건축물의 옥상바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용적을 산정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건축물 바닥면적은 지붕(천장)이 없는 옥상 위는 산정하지 않아야 하나, 그동안 특별한 이유없이 유권해석 등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정하는 지자체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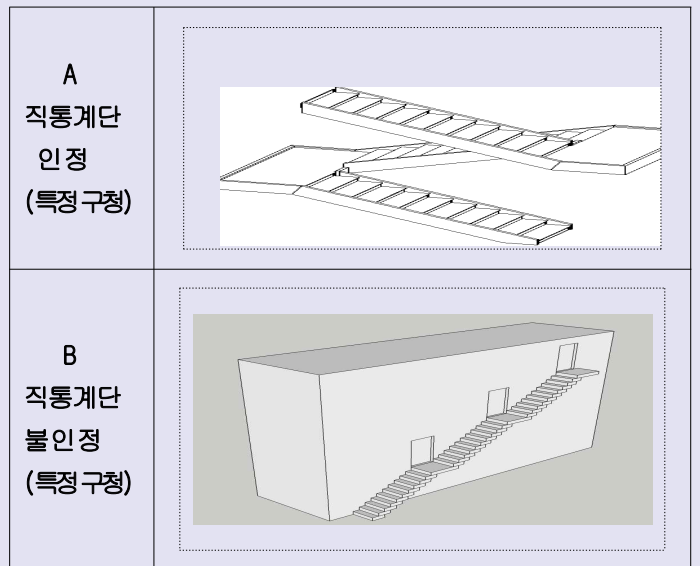
③ 업무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전산시설은 본 시설과 다른 대지에 설치하더라도 업무 시설로 구분하기로 하였다.

전산시설은 사옥과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방송통신시설로 판단하고 있었으나, 실제 사무를 위한 공간으로 시설 특성과 기능이 방송국, 통신용시설 등의 방송통신시설로 보기 어려워 업무시설로 판단하였다. 업무시설로 인정되면 방송통신시설에 비해 입지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넓다.

④ 면적 및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필로티 구조 (벽면적의 1/2 이상이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구성)의 판단기준을 개선하였다.

현재는 필로티 부분 내부에 벽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필로티 구조에서 제외하나, 내부 벽이 거실설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 기능을 위해 설치한다면 필로티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⑤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하여 특정 구청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법령에도 근거하지 않은 계단 형태(A)만 인정하는 해석을 개선하여 일직선 방향의 경사 형태(B)도 직통계단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4건에 대하여는 법령 규정 및 안전 등을 고려하여 기존 해석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①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상인 건축물 높이 31m 초과여부 판단시 최상층 바닥이 31m 아래에 있어도 전체 높이가 31m를 넘는 경우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토록 하였다.

② 기타 개발제한구역내의 위법 건축물 양성화는 구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엄격 관리 하도록 하였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구역 지정 전 건축물은 양성화 가능하나, 구역 지정 후 별도의 대수선 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배제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8일 「건축법」 개정·공포로 금년 11월 29일부터 각 시도 및 시·군·구에도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고 하였으며,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 유도를 위해 각 시·도의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연말에 발표하는 우수 건축행정 지자체 선정에 대폭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2



주택임대사업자, 규제는 줄고 혜택은 늘어난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7.8)

- ◇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등록요건 및 각종 임대 규제 완화
-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조세감면·금융지원 대폭 확대
- ◇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별도공급 허용 (단지·동 단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2월26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7월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 주택 전환등록 촉진
(안 제8조의2제1호, 제13조제1항)

-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으로 이미 등록한 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전환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 * (현행)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허용
- 이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한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 ◆ '13.12월 도입된 제도로 임대사업자에게 강화된 조세감면·금융지원을 제공하여 민간 임대사업자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되, 기존의 5년매입임대주택에 비해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장치를 강화한 것이 특징임
- ⇒ 민간임대주택이면서도, 장기의 의무임대기간(10년), 최초임대료 제한(주변시세 이하) 및 임대료 인상을 제한(연 5% 이하)를 통해 임차인 주거안정 확보

- ②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허용사유를 확대하여 사업 부담 완화
(안 제13조제3항제3·4호 및 제7항 신설)
- 종래 임대주택을 매각하려면 부도, 파산, 2년 이상 적자 등 엄격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했으나,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1년간 20%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기간 계속 공실이었던 주택, ②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철거 예정인 임대주택과 같이 임대사업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도 임대의무기간 내 중도매각을 허용한다.
- * (현행) 등록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금융·세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5년 또는 10년(준공공임대주택) 이상 임대를 계속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어, 해당 기간 매각하지 못하게 되는 부담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주저하는 사례가 많았음

국토교통부는 그 밖에도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가 대부분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매입 자금 용자 대상 확대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 3.26)
- 매입자금 용자대상 주택을 미분양주택·기존 주택에서 신규분양주택*으로 확대하였다.
- * 다만, 용자규모는 미분양·기존주택의 경우와 달리 5호분에 한정

**준공공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조건**

- ◆ (준공공임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구입시
 - 세대당 수도권의 경우 1억5천만원(지방 7천5백만원) 한도에서
금리 연 2.7%로 10년만기 상환(임대 계속 시 1년 단위 연장 가능)
- ◆ (매입임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아파트) 구입 시
 - 세대당 수도권의 경우 1억5천만원(지방 7천5백만원) 한도에서
금리 연 3.0%로 5년만기 상환(임대 계속 시 1년 단위 연장 가능)

- ② 임대사업자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임대주택법 개정, 5.28)
 -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 신고의무 미이행 등 비교적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하여 이를 과태료로 전환하였다.
- ③ 임대사업자 민영주택 별도공급 활성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6.30)
 - 민영주택 분양 시 20호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가 단지·동·호 단위로 별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주택을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하였다.

- * (현행) 임대사업자 중 리츠·부동산펀드에 허용(조례 필요 + 시군구 승인)
- * (개정) 20세대 이상 임대사업자 모두에 허용(조례 불필요 + 시군구 승인)

- ④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제한 폐지(임대주택법 개정, 5.28)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을 '13.4.1일 이후 매입한 주택'에서 전용면적 85㎡이하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였다.

- ⑤ 준공공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확대(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5.28)
 - 준공공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40~60㎡는 50%에서 75% 감면으로, 전용면적 60~85㎡는 25%에서 50% 감면으로 확대하였다.

- ⑥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아직 추진중)
 -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향후 3년간 주택을 구입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계획이나,
 - 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아직 진행중인 상태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나 (1월 10호 → 3월 26호 → 5월 95호),
-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금융·세제혜택 및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60

'젓은 도로 굴착' 없애 생활불편 낭비 줄인다

▶ 5년 단위 계획 따라 굴착.... 도로구역 내
물류시설·공원 설치 가능

앞으로 도로부지에서 도시가스나 상수도
사업을 할 때마다 수시로 도로를 굴착하여
예산과 비용을 낭비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던
관행이 줄어들게 된다.

앞으로는 각종 기반시설 사업자가 도로를
굴착할 경우, 사업자는 5년 단위의 사업계획
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고, 관리청은 이를 토
대로 개별 사업의 시기를 조정하여 통합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5일부터 시행된다
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로구역 내 유희부지가
있을 경우, 물류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이나
공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점용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건물 출입구에 장애인용 접근로를 설치할
경우 점용료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또한, 도로시설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화물차의 차축을 조작
하거나 축간 거리·축의 높이를 조절하고 바퀴의
공기압을 조절함으로써 적재량 측정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점용, 과적단속 분야를 개선
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도로이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
다.

■ 자료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879

역주행·결빙구간 알려주는 '똑똑한 고속도로'

▶ 교통사고 예방기술 실용화 성큼.....
경부고속도로 검증작업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고속도로에서 교통
사고를 유발하는 급정거, 낙하물, 고장차량 등
돌발 상황을 탐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경부고속도로 서울-수원 구간에서
검증작업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개발한 교통사고 예방
기술은 차량용 고속무선통신(WAVE)*을 활용한
차량 간 정보교환 기술과 레이더, 파노라마
CCTV를 활용한 낙하물 등 돌발 상황 자동
검지기술 등이다.

* 차량용 고속무선통신기술(WAVE : Wireless
in Vehicular Environment) :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면서 주변 차량의 위치, 상태와 도로에
설치된 기지국으로부터 주변 사고, 낙하물
등 위험상황과 교통정보를 송수신하는 통신
기술

차량 간 정보교환 기술은 반경 500m의 차량의 위치, 속도, 상태 등의 정보를 0.1초 단위로 파악이 가능하여 급정거, 차량정차 등 미처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소위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기술이다.

사고나 고장 등으로 차량이 서있는지 모른 채 뒤따르던 차량이 추돌하는 2차 사고는 치사율이 일반사고의 6배에 달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다. 그러나 차량이 다른 차량 또는 도로에 설치된 통신 시설을 통해 고장차량 위치를 정확히 알게 되면, 연쇄 추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 : 일반사고(11.2%), 2차사고(62.3%)

또한,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졸음, 전방주시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등에 따른 추돌사고도 상당수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원인 : 졸음 (458건, 31.1%), 전방주시태만(425건, 28.9%), 안전거리 미확보(38건, 2.6%)

차량 간 정보교환 기술은 교통사고 발생 원인의 약 80%를 예방할 수 있어 미국, 유럽 등에서 2~3년 내 상용화를 목표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기술이다.

레이더 활용 돌발 상황 자동 검지기술은 그간 CCTV 감시, 순찰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한 무단보행, 역주행, 낙하물 등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도로관리자와 운전자에게 즉시 알려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최근 5년간 무단보행사고(71건, 4.8%), 역주행사고(12건, 0.8%)

레이더 기술은 특히, 안개, 강설 등 악천후에서도 도로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CCTV로 확인이 어려운 결빙, 포트홀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사고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검증시험은 금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고속도로 외 국도, 지방도, 시내도로에서도 차량 간 정보교환 기술에 대한 시험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된 교통사고 예방기술이 본격 상용화 되면, 고속도로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 국민들의 안전한 교통생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31)210-3927



과적화물차 “이동식 단속 늘리고 과태료 상향”

▶ 화물차 과적 근절대책 -- 자중계 설치 등 과적 예방도 유도

도로상 화물차 과적을 근절하기 위해 이동식 단속을 늘리고 현재 최고 300만 원 수준인 과태료를 상향조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와 같은 ‘도로상 화물차 과적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국무회의(7.29, 화)에 보고하였다.

과적 화물차는 교량 등 시설물에 과도한 충격을 주어 시설물의 붕괴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도로 포장에 파손시켜 운행하는 자동차의 손상이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적 화물차는 제동거리가 길고 무게중심이 위쪽으로 쏠려있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며, 사고 발생 시에는 사망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과적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즉,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의 중량 제한과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의 규격 제한을 두어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과적운행이 줄지 않고 있으며, 단속을 피해 운행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화물차 과적 근절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도로상 과적근절을 위해 상시적으로 24시간 운영 중인 고정검문소는 해당구간을 고의적으로 회피하여 운행하는 경우 단속이 못 미치게 되는 맹점이 있어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꾸어 단속을 하는 이동식 단속 비중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일반국도 상에 이동단속 검문소를 200개소 이상 확충

아울러 경찰과 더불어 국토관리사무소, 지자체, 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 간 합동 단속 체제를 구축하여 단속망이 촘촘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카메라를 이용해 과속단속을 하는 것처럼 과적도 카메라와 단속 장비를 조합하여 고속주행 화물차에 대해서도 무인 단속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현재 고속도로 상 6개 지점에서 시험적으로 운영 중인 고속무인단속시스템의 측정 결과를 토대로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 무인 단속 지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나갈 방침이다.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 최고 300만 원 수준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정도가 심한 위반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도 받도록 할 방침이다.

* 현재 위반정도과 위반횟수 등에 따라 30~300만원 까지 과태료 부과

현행 단속체계는 과적을 유발한 주체가 분명하게 가려지지 않아 화물차 운전자에게 주로 과적의 책임이 부과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화물 위탁 과정에서 과적의 책임

소재가 명백히 드러나도록 점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운전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과적제한 기준을 초과해 화물을 싣게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화물 무게 측정이 가능한 자중계도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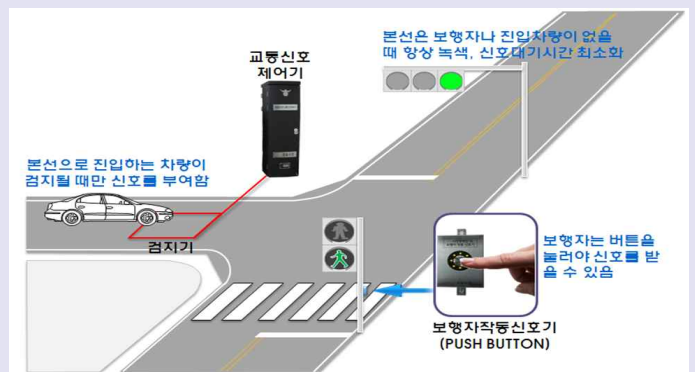
국토부는 즉시 시행이 가능한 이동식 중심 단속, 합동 집중단속 등은 우선 시행하고, 다른 방안들은 세부방안을 마련한 후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벌강화와 제도개선 등을 통한 단속기능 강화도 필요하겠으나, 무엇보다 과적이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과적 운행을 하지 않는 성숙한 준법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자료 :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 (044)201-3924

●.....● 똑똑한 신호등 ! 불필요한 신호대기 사라진다

▶ 국토교통부, 경찰청 “감응신호시스템” 국무회의 보고



<그림> 감응식 교통신호 구성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경찰청(청장 이성환)은 7.22일 교차로 소통능력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교차로 감응신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감응신호시스템은 방향별 이용차량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꼭 필요한 신호만 부여하고, 나머지 시간은 주도로에 직진신호를 부여하므로, 교차로에서 불필요한 신호대기 및 혼잡을 완화하고 신호 위반을 감소시킬 수 있어 선진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 일반신호시스템은 교통상황에 관계없이 신호가 고정적으로 반복 표출되어, 불필요한 신호대기 및 신호위반 유발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서울시, 인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적용한 바 있으나, 포장체 속에 매설되는 차량검지기의 끊어짐으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문제 및 관련 민원 등으로 본격 도입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도입효과 검증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경찰청과 협의하여 시범사업을 시행('13. 8~'14. 4)하였다

- * (도시부) 화성시 국도43호선 장안대입구~왕림성당 앞 2.0km 구간
- (지방부) 포천시 국도87호선 가산교차로~유교 3 교차로 2.0km 구간

시범사업 결과, 교차로 1개소당 직진(녹색) 시간은 시간당 약 11분(27%↑) 증가되고 통과 차량대수는 약 259대가 증가(12%↑)되며, 신호 위반건수가 1일 167건 감소(51%↓)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시범사업 효과를 전국 주요국도에 적용할 경우 사회적 편익이 연간 4,640억원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시범사업에서 변형에 강한 특수포장을 교차로에 적용하여 차량검지기 파손문제를 해소하였다.

정부에서는 감응신호시스템을 확대 도입하기 위하여 금년 말까지 설치기준 및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도로의 활용성을 극대화시켜 신규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정부예산을 절약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
(044)201-3893

IV. 재해대책의 현황

5. 지진 재해대책

(1) 일본에서의 지진

일본은 지구 전체를 덮고 있는 십여개의 플레이트 가운데 4개 플레이트가 집중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플레이트 경계나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입기 쉬운 지진열도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매그니튜드(M)6 이상의 지진 전체의 20% 이상이 일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플레이트의 침강으로 인해 발생하는 플레이트 경계형 거대지진 (1925년의 관동 대지진 등), 플레이트의 운동에 기인하는 내륙영역의 지각내 지진 (1995년의 한신·아와지 대지진 등) 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2) 관측 체제

지진활동을 항상 감시하기 위해, 기상청 등 유관기관에 의해 전국 각지에 진원 위치나 지진 규모 추정, 쓰나미 경보 등을 위해 활용하는 지진계와, 각지의 진동의 세기를 측정하는 진도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데이터는 기상청에 집약되고, 일본 및 그 주변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진원에 가까운 지진 계로 관측된 초기 미동을 해석하여 최대진도 5약(弱) 이상이 예상된 경우에 긴급 지진속보가 발령됩니다. 게다가 발생 후 약 2분만에 진도 3 이상의 진도를, 5분만에 진원 위치, 지진 규모 및 큰 진동이 관측된 시정촌의 진도가 발표됩니다.

과거 30년 동안에 발생한 주요 지진과 진원역

날 짜	지진명 또는 진원	날 짜	지진명 또는 진원
'82.3.21	우라카와 앞바다(浦賀沖) 지진	'03.7.26	미야기현(宮城県) 북부
'93.1.15	구시로 앞바다(釧路沖) 지진	'03.9.26	도카치 앞바다(十勝沖) 지진
'94.10.4	홋카이도 동방 앞바다(北海道東方沖) 지진	'04.10.23	니가타현(新潟県) 추에쓰(中越) 지진
'94.12.28	산리쿠 먼 앞바다(三陸はるか沖) 지진	'05.3.20	후쿠오카현(福岡県) 서방 앞바다
'95.1.17	효고현남부(兵庫県南部)지진 한산·아와지(阪神·淡路)대지진	'05.8.16	미야기현(宮城県) 앞바다
'97.5.13	가고시마현(鹿児島県) 사쓰마(薩摩) 지방	'07.3.25	노토반도(能登半島) 지진
'98.9.3	이와테현(岩手県) 내륙 북부	'07.7.16	니가타현(新潟県) 추에쓰(中越) 앞바다 지진
'00.7.1	니지마 섬(新島)·고즈시마 섬(神津島) 근해	'08.6.14	이와테(岩手)·미야기(宮城) 내륙 지진
'00.10.6	돗토리현(鳥取県) 서부 지진	'08.7.24	이와테현(岩手県) 연안 북부 지진
'01.3.24	게이요(芸予) 지진	'09.8.11	스루가만(駿河湾) 지진
'03.5.26	미야기현 앞바다(宮城県沖)		

(3) 대규모 지진 대책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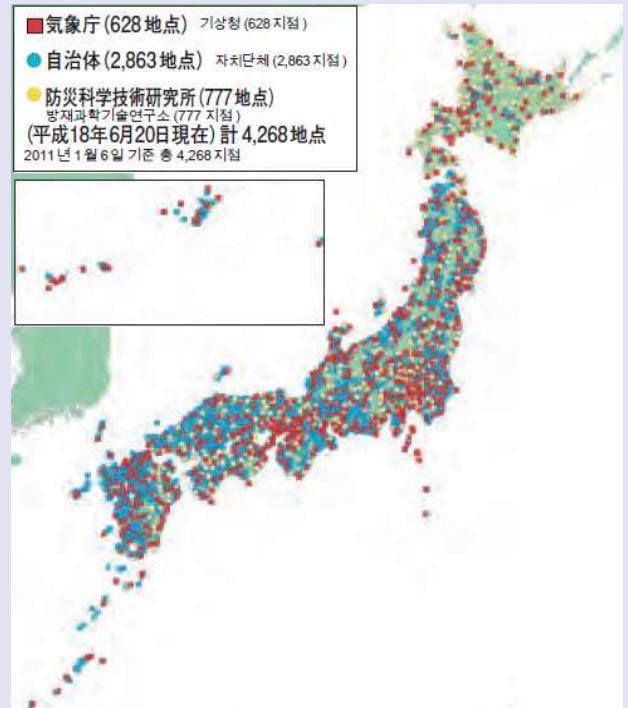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절박성이 지적되고 있는 대규모 지진으로서, 도카이 지진, 도난카이·난카이 지진, 일본해구·치시마해구 주변 해구형 지진, 수도직하지진, 중부권·긴키권 직하지진 등이 있습니다.

해구형 지진인 도카이, 도난카이·난카이, 일본해구·치시마해구 주변 해구형 등 각 지진에 대해서는 각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할 지역을 지정하고, 관측체제 강화, 행정기관이나 민간사업자에 의한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재정의 특별 조치를 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피난처나 소방용 시설 등의 정비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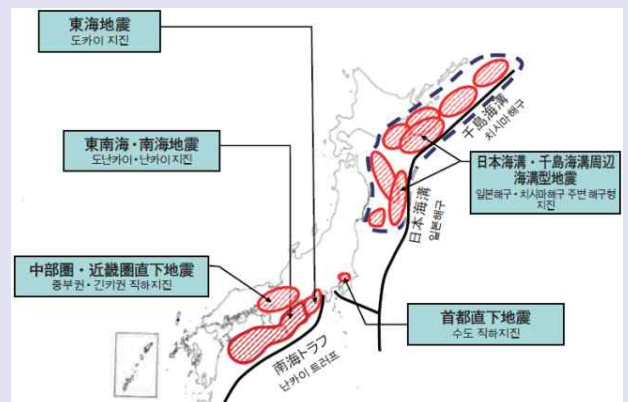
그리고, 대규모 지진별로, 중앙 방재회의에서 예방대책부터 재해발생 후의 대처까지를 포함한 마스터플랜인 「대책 대강」, 피해규모 상정의 입각한 재해 감축목표와 그 달성을 위한 구체적 목표를 정한 「지진 방재전략」, 재해 발생시에 유관기관이 취해야 할 행동을 제시한 「응급대책활동 요령」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규모 지진 외에도 한신·아와지 대지진, 니가타현 추에쓰 지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진은 전국 어디서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방도시 등에 있어서의 지진 방재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한 전문조사회」에서 대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진도 관측점



대규모 지진 대책개요



(4) 도카이 지진 대책

1854년의 안세이 도카이 지진 이후, 스루가 트러프에 따른 지역에서는 약 160년에 걸쳐 지각의 비뚤어짐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도카이 지진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도카이 지진은 현시점에서 유일하게 직전 예지 가능성이 있는 지진이며, 대규모지진대책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지진방재대책 강화지역이 지정(2010년 4월 기준으로 8도현 160시정촌)되고 관측체제 강화, 예지 정보가 발령되었을 경우의 지진 방재체제의 정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직전 예지에 유효하다고 생각되는 관측 데이터는 기상청에 의해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있습니다. 관측 데이터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도카이 지진과 관련되는 조사 정보(임시), 도카이 지진 주의 정보, 도카이 지진 예지 정보가 발표됩니다. 내각총리대신은 지진 예지 정보의 보고를 바탕으로 경계선언을 발령하고, 지진재해 경계본부 설치 등 대응을 취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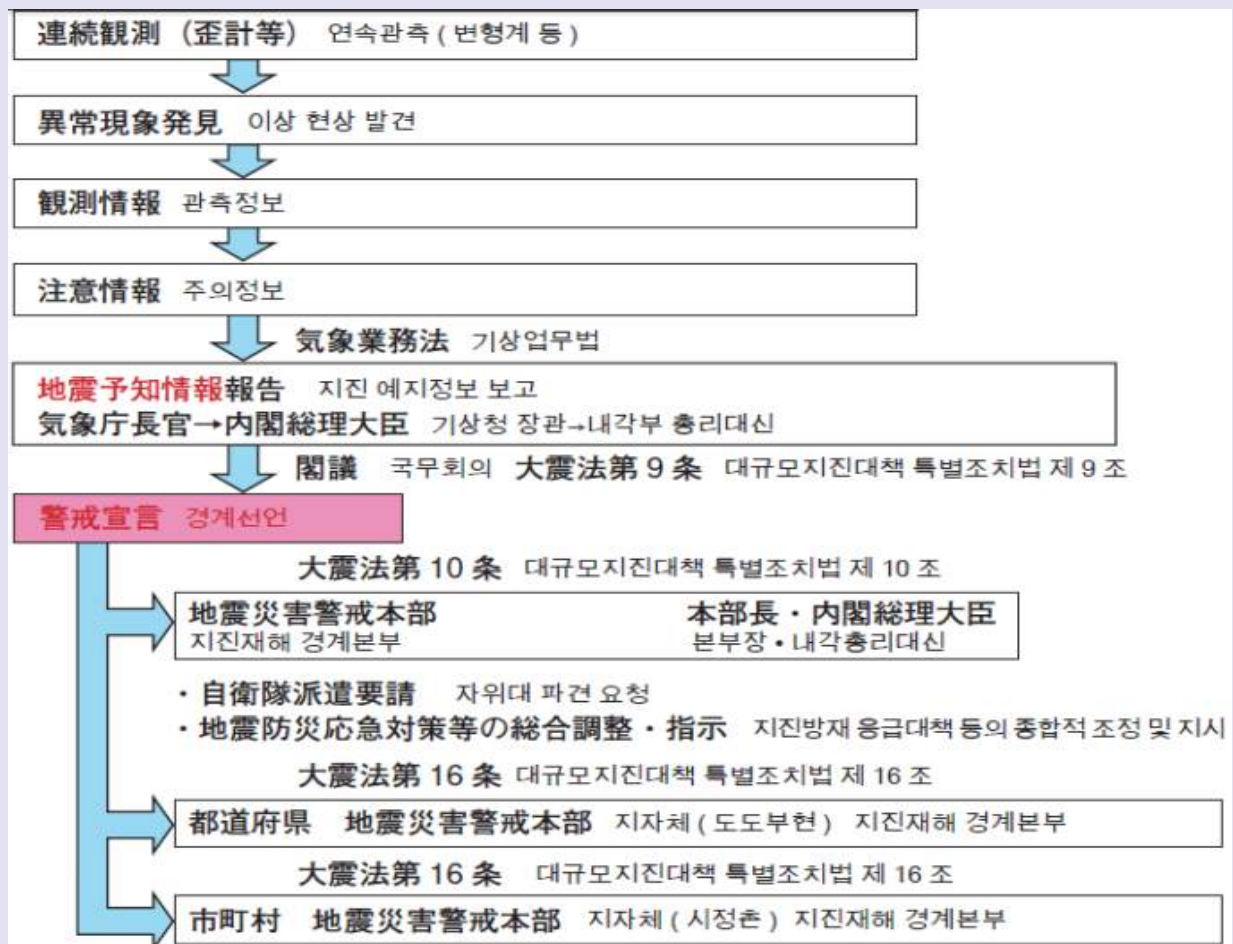
중앙방재회의는 대규모지진대책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경계선언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있어서의 중앙정부의 지진 방재에 관한 기본적 방침 등을 정한 「지진방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유관기관은 각자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관련 지방공공단체가 각자의 계획에 입각하여 지진 방재상 긴급히 정비해야 할 시설 등을 정비할 경우에는 지진 방재대책 강화지역에서의 지진대책 긴급정비사업과 관련된 국가 재정상의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고 보조율 인상 및 지방 재정조치 등 특별 조치가 강구되고 있습니다.

도카이 지진 대책에 대해서는 대규모 지진 대책특별조치법이 제정된 이후 사반세기에 걸쳐서 축적된 각종 관측 데이터나 학술적 지견을 바탕으로 중앙방재회의에서 2001년에 상정 진원역의 재검토가 실시되었고, 2002년에 강화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2003년에는 중앙방재회의에서 새로운 상정 진원역에 입각한 피해규모 상정이 공식 발표되고, 직전 예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망자가 최대 약 9,200명으로 이르는 등 극심하고 광역에 걸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발표되었습니다.

도카이 지진과 관련된 예지 체제개요



중앙방재회의는 같은 해, 긴급 내진화대책 등의 실시, 지역에서의 재해 대응 능력 강화, 경계선언 발령시 등의 적절한 방재체제 확립 등을 주요 항목으로 하는 「도카이 지진대책 대강」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입각하여 2005년에는 10년 동안에 사망자수 및 재산 피해액을 반으로 줄인다는 재해 감축 목표와, 10년 사이에 주택의 내진화율 90%까지 올릴 것을 목표로 하는 등 구체적 목표를 정한 「도카이 지진의 지진 방재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주의 정보 발령 시, 경계선언 발령 시, 재해 발생시 등 각 단계에서의 방재 유관기관이 취해야 할 행동을 정한 「도카이 지진 응급대책 활동요령」을 2003년에 수립하여, 2006년에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입각하여, 경계선언 발령 시 또는 돌발적 지진 발생시에 있어서의, 구조, 소화, 의료 등 활동에 종사하는 부대의 구체적 활동 내용을 정한 계획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5) 도난카이·난카이 지진 대책

도난카이·난카이 지진은 과거 100~150년 간격으로 M8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944년에 도난카이 지진, 1946년에 난카이 지진이 각각 발생한 적이 있으며, 21세기 전반에도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중앙방재회의에서는, 진원역이나 지진 진동의세기, 쓰나미의 높이 분포 등을 검토하여 2003년에 피해규모 상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망자는 최대 약 18,000명, 이중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가 약 8,600명에 이를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중앙방재회의는, 같은 해, 쓰나미 방재체제 확립, 광역 방재 체제 확립, 계획적이고 조속한 예방 대책 추진 등을 주요 항목으로 하는 「도난카이·난카이 지진 대책 대강」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도난카이·난카이 지진과 관련된 지진 방재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같은 해, 지진방재대책 추진 지역이 지정 (2006년 4월 기준으로 21도부현 403시정촌)되고, 2004년에는 「도난카이·난카이 지진 방재대책 추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를 기초로 유관기관은 각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재회의는 2005년, 10년 사이에 사망자수 및 재산 피해액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재해감축 목표와, 10년 사이에 쓰나미 해저드 맵 작성을 100%를 지향하는 등 구체적 목표를 정한 「도난카이·난카이 지진의 지진 방재전략」을 수립하고, 2006년에는 「도난카이·난카이 지진 응급대책 활동 요령」, 2007년에는 이에 입각한 구체적 활동 내용을 정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 일본해구·치시마해구 주변 해구형 지진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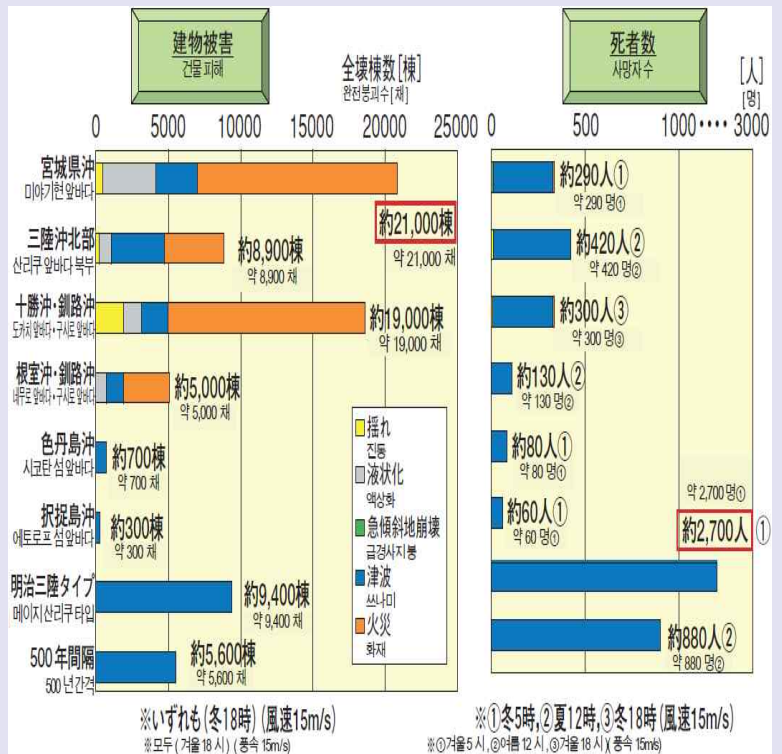
치바현 동쪽 앞바다에서 산리쿠 앞바다에 걸친 일본해구, 산리쿠 앞바다에서 도카치 앞바다를 지나 에토로프 섬 앞바다에 걸친 치시마해구 주변에서는, M7 또는 8급의 대규모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896년의 메이지 산리쿠 지진 쓰나미 처럼 거대한 쓰나미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가져 온 것, 약 40년 간격으로 발생하고 있는 미야기현 앞바다 지진처럼 절박성이 지적되고 있는 것 등, 여러 타입의 지진이 있습니다.

중앙방재회의에서는, 방재대책의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는 8개 지진에 대해 정리함과 동시에, 지진 진동의 세기, 쓰나미의 높이 분포 등을 검토하여 2006년에 피해 규모 상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앙 방재 회의는 같은 해, 쓰나미 방재 대책 추진, 지진에 강한 도시 조성 추진, 적설·한랭 지역에 특유한 문제에 대한 대처 등을 주요 항목으로 하는 일본 해구·치시마 해구 주변 해구형 지진대책 대강」을 수립하였습니다.

일본해구·치시마 해구 주변 해구형 지진과 관련된 피해규모 상정



또한, 일본해구·치시마해구 주변 해구형 지진과 관련된 지진 방재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입각하여, 2006년에 지진 방재 대책 추진 지역을 지정 (2006년 4월 기준으로 5도현 119시정촌) 하고, 「일본해구·치시마해구 주변 해구형 지진방재대책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유관기관은 각자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07년에는 「일본해구·치시마 해구 주변 해구형 지진대책 응급활동 요령」, 2008년에는 「일본해구·치시마해구 주변 해구형 지진방재전략」, 을 책정하였다.

(7) 수도 직하지진 대책

수도지역에 있어서는 간토 대지진과 같은 M8 급의 해구형 거대 지진이 200~300년 간격으로 발생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M8급의 지진이 발생하기에 앞서 M7 급의 「수도 직하지진」 이 여러차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 절박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중앙방재회의에서는, 18개 지진에 대해 피해규모 상정을 실시하고, 이 중 도쿄만 북부 지진 (M7.3을 상정)에 대해서는 사망자가 최대 약 11,000명, 완전 붕괴 건물이 약85만채, 재산 피해액이 약 112조엔이란 막대한 피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앙 방재회의는 2005년, 수도 중추 기능의 계속성 확보, 방대한 피해에 대한 대응을 주요 항목으로 하는 「수도 직하지진 대책 대강」을 수립하였습니다.

수도 직하 지진의 지진방재 전략개요

재해 감축 목표

앞으로 10년 사이에 사망자 수(상정)를 절반으로

- 풍속 15m/s
약 11,000명→약 5,600명(절반으로)
- 풍속 3m/s
약 7,300명→약 4,300명(40% 감소)

구체적 목표

주택·건축물 내진화
: 내진화율 75% → 90%

가구 고정 : 가구 고정율 약 30% → 60%

밀집 시가지 정비
: 불연영역을 40% 이상

초기 소화율 향상
: 자주방재조직을 72.5% → 96%

급경사지 붕괴 위험 장소 대책
: 급경사지의 붕괴로 인한 재해로부터 보전되는 가구 수 약 1.3배

재해 감축 목표

앞으로 10년 사이에 재산 피해액(상정)을 40% 감소

- 풍속 15m/s
약 112조엔→약 70조엔(40% 감소)
- 풍속 3m/s
약 94조엔→약 60조엔(40% 감소)

구체적 목표

복구비용 경감대책 :

- 주택·건축물의 내진화율: 75% → 90%
- 긴급수송 도로의 교량 내진보강을 거의 완료
- 내진강화 안벽 정비율 약 55% → 약 70%

기업에의한 사업 계속 :

- BCP 수립 기업의 비율
- 대기업 : 거의 전부 중견기업 :50% 이상

교통 네트워크 조기 복구대책 :

- 주택·건축물의 내진화율 75% → 90%
- 긴급수송 도로의 교량 내진보강을 거의 완료
- 내진강화 안벽의 정비율 약55% →약70%

이 대강에 대해서는 2010년에 방대한 수의 피난자와 귀가 곤란자 등에 관한 구체적 대책을 추가하는 수정을 가했습니다.

이 대강에 입각하여 2006년에는 10년간으로 사망자 수를 반으로 줄이고, 재산 피해액을 40% 줄이는 재해 감축목표와, 10년간으로 주택·건축물 내진화율 90%, 가구 고정율을 60%를 각각 달성할 것을 지향하는 등 구체적 목표를 정한 「수도 직하지진의 지진 방재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해 「수도 직하지진 응급대책 활동 요령」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입각한 구체적 활동 내용을 정한 계획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8) 중부권·긴키권 직하지진 대책

도난카이·난카이 지진은 21세기 전반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만, 한편, 다음 도난카이, 난카이 지진의 발생을 향해 중부권·긴키권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지진활동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 활동기에 들어서고 있다는 지적도 있으며, 실제로 과거의 사례를 보면 서일본의 내륙에서는 도난카이, 난카이 지진의 전후에 지진활동이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중부권·긴키권에서는 부현의 구역을 넘어서 시가지가 광역화되고 있으며,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의 피해는 심대하고 광범위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중앙방재회의에서는 중부권 5타입, 긴키권 8타입의 지진에 대해 피해규모 상정을 실시하고, 이들 중 우에마치 단층대 지진에 관해서는 사망자가 최대 약 42,000명, 완전 붕괴 건물이 약 97만채, 재산 피해액이 약 74조엔, 사나게 - 다카하마 단층대 지진에 관해서는 사망자가 최대 약 11,000명, 완전 붕괴 건물이 약 30만채, 재산 피해액이 약 33조엔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가 상정되고 있습니다.

중앙방재회의는 2009년, 방대한 피해에 대한 대응, 목조주택 밀집 시가지의 방재대책 추진과 문화유산의 피해경감 등 중부권·긴키권에서의 특징적 피해 현상에 대한 대응을 주요 항목으로 하는 「중부권·긴키권 직하지진 대책 대강」을 수립하였습니다.

(9) 건축물 내진화

한신·아와지 대지진에서는 희생자의 80% 이상이 건축물의 붕괴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도카이 지진이나 수도 직하 지진 등 대규모 지진으로 인한 피해 규모 상정에서도 건축물의 붕괴로 인한 막대한 사망자 수가 상정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내진기준이 강화된 1981년 이전에 건축되어 내진성이 빈약한 주택이 전국에 21% 나 있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는 약 30%, 병원은 약 40%가 내진성 부족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중앙방재회의는 2005년, 건축물의 내진화에 대해, 사회 전체의 국가적 긴급과제로서 관계부처가 긴밀한 연계 아래 전국적으로 긴급하고 강력하게 실시할 것을 정한 「건축물의 내진화 긴급대책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내진개축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내진개축 촉진 계획 수립 등 대책 강화가 도모되었습니다. 또한, 내진 진단이나 내진개축 비용 조성제도가 확충되고, 주택과 관련된 내진개축 촉진세제가 창설되었습니다.

내각부에서는 전국을 사방 1km의 구역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지진으로 흔들리기 쉬운 정도를 개관적으로 나타낸 「표층지반의 진동 용이성 전국 지도」를 공식 발표함과 아울러, 사방 50m 정도의 지반의 진동 용이성과 건물 붕괴 위험성을 나타내는 「지진 방재 지도」를 시구정촌이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법을 정리하여 지진 방재지도 보급을 꾀하고 있습니다.

내진화의 목표와 진척상황

시 설 명	내진화의 목표	진척상황
주택·건축물	9할(2015년) ※ 1. 「신성장전략장 전략(기본방침)」 (2009.12.30 국무회의 결정)에 있어서, 2015년까지 내진화 달성 95%의 목표를 설정되었다.	주택 : 79% 다중이용시설 : 80% (2008년)
학교 시설 (공립 초·중·고)	지방자치체에 의한 대처 상황을 근거로 하고, 모든 공립 초·중·고등학교시설에 있어서의 내진화를 착실하게 추진한다. (2010년도 내진개수 상황조사)	73.3% (2010. 4. 1)
병원 시설 (재해 거점병원· 구명 구급센터)	내진화되지 않고 있는 재해거점병원·구명구급 센터 (약38%) 가운데, 약 5할 정도의 시설을 내진화 (약 8할) (2014년도까지)	62.4% (2009. 8)

(10) 쓰나미 대책

일본은, 주위를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해안선이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쓰나미의 피해를 입기 쉬우며, 과거에도 메이지 산리쿠 지진 쓰나미(明治三陸地震津波), 니혼카이 중부 지진(明治三陸地震津波), 홋카이도 남서 앞바다 지진(北海道南西沖地震) 등 쓰나미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근해에서의 지진에 따르는 쓰나미 이외에도, 해외에서 발생한 지진에 기인한 원지 쓰나미가 일본을 강습할 수 있습니다. 1960년에는 칠레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태평양을 건너 약 22시간 후에 일본에 도달하여 142명의 인명피해가 난 적이 있습니다.

쓰나미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지진이 일본 근해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기상청에 의해 지진 발생 후 약 2~3분 만에 쓰나미 경보·주의보가 발령되며, 이어서 예상 높이, 도달시간이 발표됩니다. 이들 정보는 즉시 방재 유관기관이나 보도기관에 제공되며, 나아가 주민이나 선박에도 전달됩니다.

쓰나미 대책으로서, 쓰나미 경보 등의 발표·전달 신속화, 해안 제방(방조제)과 방조수문 등의 정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각부에서는 지방공공단체에서의 쓰나미 해저드 맵 작성이나 쓰나미 피난 빌딩의 지정·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유관 부처와 연계하여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보급을 꾀하고 있습니다.

쓰나미 피해의 역사

재 해 명	년월일	사망·행방불명자
明治三陸(메이지 산리쿠)地震津波(M8.1/4)	1896. 6. 15	약 22,000명
昭和三陸(쇼와 산리쿠)地震津波(M8.1)	1933. 3. 3	3,064명
東南海(도난카이)地震(M7.9)	1944. 12. 7	1,223명
南海(난카이)地震(M8.0)	1946. 12. 21	1,443명
칠레 지진 쓰나미(M9.5)	1960. 5. 23	142명
十勝沖(도카치 앞바다)地震(M7.9)	1968. 5. 16	52명
日本海中部(니혼카이 중부)地震(M7.7)	1983. 5. 26	104명
北海道南西沖(홋카이도 남서앞바다)地震(M7.8)	1993. 7. 12	230명

※ 쓰나미 이외의 원 인으로 인한 사망자·행방불명자 포함(본토 북귀전의 오키나와에서의 3명을 포함)

다음호에 계속...

■ 자료 : 지방건설기술심의회 김 대 유
(주)덕성 부회장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입법예고일 : 2014. 7. 2.(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870호)

□ 예고기간 : 2014. 7. 2. ~ 2014. 8.12

□ 개정이유

- 다중이용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많은 사람이 이용하여 사고 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을 2종시설물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 시설물의 노후 등으로 인해 취약해진 시설물(D,E급)에 대하여 계절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

□ 주요내용

가. 2종시설물 범위 확대(영 별표 1)

- 많은 사람이 이용하여 사고 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동물원, 식물원,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을 2종시설물 범위에 포함

나. 취약시설물(D, E급)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 강화(영 별표 1의2)

- 취약시설물(D, E급)*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정기점검을 반기 1회에서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년 3회 이상으로 강화

* 안전등급 기준(시특법 시행령 별표 3의2)으로 D급(미흡), E급(불량)인 시설물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1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2-201-3587, 팩스 : 044-201-5553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 입법예고일 : 2014. 7. 7.(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 예고기간 : 2014. 7. 4. ~ 2014. 8. 13.

□ 개정이유

건설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의 상습체불업체 명단 공표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2580호, 2014.5.14. 공포, 11.15.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에 대해 자본금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혁 과제를 이행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업 등록기준 정비(안 제13조)

건설업 등록기준 중 ‘휴업 등으로 등록말소시 1년 6개월간 등록 금지’ 조문이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등 건설업 등록기준 정비

나.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에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안 제16조)

능력있는 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동 범위반으로 제재를 받지 않은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1회에 한하여 해당 업종 자본금 기준의 50% 면제(보유업종 자본금 기준의 50% 범위내)

다. 공공기관 범위 규정(안 제34조의3, 안 제34조의5)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으로 규정

라. 상습체불업자 명단 공표 관련(안 제82조의3, 안 제82조의4, 안 제82조의 5)

- 1) 상습체불업자 사망·실종, 체불 대금 전액 지급, 체불 대금 지급계획 소명 등 심의위원회에서 제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상습체불업자 공표 대상에서 제외
- 2) 공표 방법은 관보에 고시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건설산업정보망에 3년간 게시
- 3)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마.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실태조사 권한 등 위임(안 제86조)

건설업체의 하도급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실태조사 권한과 실태조사 관련 제재 처분(과태료 등)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497, 3515 팩스 : 044-201-5546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입법예고일 : 2014. 7. 8.(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 예고기간 : 2014. 7. 8. ~ 2014. 8.18
- 개정이유

수요자의 다양한 오피스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오피스텔 분양신고 대상 범위를 20실에서 30실로 완화하고, 건축물 분양계약체결 후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는 요건을 없애는 등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시행령>

- 가. 수요자의 다양한 오피스텔 수요에 대응하고, 주거용으로 건설하는 오피스텔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 범위를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안 제2조제1호)
- 나. 건축물의 분양에 따른 신탁계약의 자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체결할 때 분양사업자가 신탁업자와 협의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에 대리사무계약 내용 중 자산관리사무를 포함할 수 있는 특례사항 도입(안 제3조제5항 신설)
- 다. 오피스텔 등 분양건축물을 분양받은 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분양시 면적 산정 방법과 동일하게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적용하여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 도입(안 제9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 라. 건축물 분양사업자의 시간적 불편을 없애고, 분양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분양계약 체결 후 남은 물량은 바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요건 폐지(안 제9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삭제)

<시행규칙>

- 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제9호에 따른 투자회사는 신탁계약에 자산관리 등 처분에 관한 사항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항 신설)
- 나. 수의계약 물량 신고 사항 등(제7조 삭제)

□ 의견제출

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로 2014년 8월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TEL: 044-201-3776, 3777, FAX: 044-201-5574)

■ 자료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입법예고일 : 2014. 7. 1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913호)
- 예고기간 : 2014. 7. 14. ~ 2014. 8. 4
- 개정이유

주택법령에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업무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범위별로 그 업무방법 및 절차가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보니 자의적인 업무이행 및 업무 소홀 등이 우려되는 상황임. 특히, 공공 공사의 감리제도와 비교할 때도 감리원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기준이 되는 세부업무 기준에 있어 그 구체성과 명확성에서 크게 차이가 있는 상황으로, 최근 주택건설 공사 현장에서 철근 누락 등의 부실공사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감리업무 세부기준의 보완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감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세부 업무별로 업무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주택건설공사 현장의 부실 방지와 품질제고를 위한 감리자의 업무를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감리원의 근무

- 감리원의 근무수칙을 보완하고 근무수칙과 역할을 상주감리원과 비상주 감리원별로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함

나. 설계도서 등의 검토

- 감리자가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 공사계획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는 내용은 사업주체에게 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감리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자료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토록하여 공사 이후 각종 변경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함

다. 확인측량 등의 검토

- 측량기준점의 이동·손실 방지와 구조물의 위치·고저 등을 관리하는 규준시설의 확인·검사 기준 등을 명시하고, 확인측량 시 감리자가 입회하도록 하고, 그 결과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 사업주체와 협의·조치 후 시공하도록 함

라.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확인

- 가설시설물 전도, 붕괴 등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받아 검토·확인하도록 하고, 설치계획서 검토·확인을 위한 기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마. 공정관리

-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예정공정표를 월간, 주간 단위로 받아 감리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도록 하고, 월간공정이 계획공정 대비 10% 이상 지연되거나 현장상황 등으로 공사 진행이 부진한 경우 사업주체와 공정 만회대책을 협의하도록 함

바. 시공상세도 승인 및 설계변경의 확인

- 감리자가 시공상세도를 검토·승인하도록 하고, 그 검토·확인을 위한 기준 및 주안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주택법령 상 설계변경 범위에 적합한지 여부 및 변경된 범위 내에서 시공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설계변경 현황을 기록·관리하도록 함

사. 시공확인

- 주요공정·단계별로 시공규격 및 수량 등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검측점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주요공정·단계에 참여하는 공사 참여자 명부를 작성, 유지·관리하도록 함
-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 과정 등에는 반드시 감리자가 입회하도록 하고, 시공자의 작업일지 및 명일 작업계획서를 확인·검토하여 감리업무 수행계획을 수립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하도록 함
- 기술적 판단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리자가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는 부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아. 자재 확인 및 품질관리

- 감리자가 자재수급계획을 사전에 검토하고, 현장에 반입되는 철근, 콘크리트 등 자재의 반입·사용·반출을 기록 관리하도록 하고, 하자 발생빈도가 높고, 시공 후 시정이 어려운 부위 등을 중심으로 중점품질관리대상을 선정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며, 중점품질관리대상은 반드시 입회하여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도록 함

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 감리자는 현장에 안전관리자, 환경관리자가 적정하게 배치되었는지 확인하고, 안전교육 실시현황을 기록하며, 잉여자재의 처리계획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확인하고 시공 및 잉여자재의 처리과정을 수시로 입회하여 확인하도록 함

차. 기타사항

- 감리자가 현장대리인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 감리자가 작성하는 최종감리보고서에 주요자재 반입·반출 및 검수 실적에 관한 검토·확인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 자료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입법예고일 : 2014. 7. 1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914호)
- 예고기간 : 2014. 7. 14. ~ 2014. 8. 4
- 개정이유

현행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는 사업수행능력 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적격심사한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지정하고 있으나, 사업수행능력 기준의 변별력이 부족하고 주택공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해당 주택건설공사에 가장 적합한 감리자 선정과 전문성 및 기술력을 보유한 감리원 배치에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최근 주택건설 공사 현장에서 철근 누락 등의 부실공사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감리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보다 기술력 있고 책임감 있는 회사와 감리원이 선정·배치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의 배점 및 평가항목 등을 조정하는 한편,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감리자 재무상태 건실도 평가 변별력 강화

- 건실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등급 등에 따른 배점 격차를 확대(현행 0.5점 → 개정 0.8점)하는 동시에, 배점상한을 상향(현행 4점 → 개정 5점)

나. 감리자 업무 수행실적 평가 변별력 강화

- 공사규모에 맞는 경험을 보유한 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기존의 수행실적 등급 기준을 세분화(현행 3개 구간 → 개정 5개 구간)하여, 업무 수행실적 평가의 변별력을 강화

다. 감리자 업무결과 평가 가점 폐지

- 감리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점수를 부여 받기 위하여 사업주체에 예속되는 문제 등의 부작용이 없도록 사업주체의 감리자에 대한 업무평가결과 가점을 폐지

라. 감리원 면접 실시

-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초고층 주택(50층 이상 또는 높이 150m 이상 주택)의 총괄감리원에 대하여 감리자지정권자가 면접을 실시하여 점수 차등 부여

마. 감리원 추가배치 시 가점 부여

- 내실 있는 감리가 될 수 있도록 구조체(기초·지정, 철근콘크리트, 철골 공사) 공사기간 동안 건축감리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정도에 따라 가점을 부여

바. 기타 개정사항

- 점수 배분 및 조정을 위해 일부 평가항목의 배점 상한을 조정하는 한편, 총괄감리원이 책임을 가지고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총괄감리원 평가항목으로 변경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 자료 : 국토교통부

액압성형된 내부식 이중복합관을 이용한 분할 클램프 연결공법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신이피엔씨(주)
	현대하이스코(주)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735호
- 기술분류 : 기계설비/건설기계/배관설비
토목>상하수도>상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보수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고압의 액압을 이용하여 외부의 탄소강관과 내부의 스테인레스강관을 기계적으로 접합시킨 내부식 이중복합관의 관단을 플랜지화 하여 2개로 분할된 클램프로 연결하는 시공기술로써 일반 용수배관 및 상수도관, 소방관 등의 배관에 적용이 가능함.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고압의 액압을 이용하여 외부의 탄소강관과 스테인레스강관을 기계적으로 접합시킨 내부식 이중복합관의 관단을 플랜지화 하여 2개로 분할된 클램프로 연결하는 시공기술

비긴장 강연선을 이용한 지하주차장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보-기둥 비내진 접합부 일체형 공법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에스에이치공사
	(주)포스코건설
	롯데건설(주)
	동서피씨씨(주)
	삼표피앤씨 주식회사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736호
- 기술분류 : 건축>철근콘크리트>Precast Concrete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인장을 가하지 않은 강연선을 이용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보-기둥 접합부 시스템으로 2~3개층 기둥이 한절로 구성되고 U자형의 Half PC보가 접합되는 기둥면 상부에는 비긴장 강연선 또는 철근이 관통하는 오프닝을, 하부에는 비긴장 강연선을 관통하는 홀을 설치하여 각각 철근과 비긴장 강연선을 연속으로 관통배근한다. 이는 기존 프리캐스트 보와 기둥의 접합시 PC보의 하부철근이 접합부 내에서 단절되는 단점을 개선시킨 것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적용가능한 공법이다.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3층이 한절로 구성된 PC기둥과 연속되는 U자형의 Half PC보의 접합을 기둥 접합면 상부에는 개구부를 설치하여 철근을 관통·배근하고, 하부에는 설치된 관통홀에 비긴장 강연선을 배근하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보-기둥 비내진 접합부 일체형 공법

2단계로 확장되는 앵커체를 이용한 암반정착 앵커 공법(EIP 공법)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 장평건설
	(주) 삼안
	(주) 포스코건설
	한국건설관리공사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737호
- 기술분류 : 토목>토질및기초>사면관리및보강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인장재 선단에 정착된 확장형 앵커체를 코일스프링의 복원력에 의해 천공홀에 밀착시킨 후 인장재를 긴장하여 천공홀 주변 암반에 압력을 가하면서 정착시켜 초기 인발저항력을 확보한 다음 그라우트를 주입하는 것으로, 2단계로 작동되는 확장형 앵커체가 초기 슬립을 방지하고, 지반 천공홀 내에 인발력에 상응하는 확장압이 작용되어 정착됨으로써 인장재에 긴장력이 유지되어 불안정한 사면활동 외측에서 저항하여 사면의 안정성을 증대시키고 무그라우팅 상태에서 초기 인발성능을 확보하여 급속시공이 가능한 앵커공법이다.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코일스프링의 복원력에 의해 1단계로 록커블럭이 확장되고, 인장재를 긴장함에 따라 록커블럭이 이동블럭의 경사면을 따라 이동하면서 2단계로 확장되어 천공홀 주변에 압력을 가하면서 밀착되는 확장형 앵커체를 정착한 후 그라우트를 주입하는 연암 이상의 강도를 갖는 암반정착 앵커공법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https://www.kaia.re.kr/>)건설신기술정보마당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심의 현황

2014년 제8회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결과

- 건 명 : 실시설계 적정성1건,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안) 7건
- 심의일자 : 2014. 7. 2.(수)

의안 번호	요청사항	사 업 명	사 업 개 요	발주청	심의결과
2014-08-01	실시설계 (적정성)	함안군 종합장사시설 (화장시설) 건립공사	· 위 치 : 가야읍 사내리 산113-1번지 일원 · 사업내용 : 화장시설 건립(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996㎡, 화장로 3기) · 사 업 비 : 161억원(공사비 144, 기타 17) · 사업기간 : 2014 ~ 2015년	함안군 (주민 복지과)	조건부

의안 번호	안 건 명	발주청	심의결과
2014-08-02	창녕군 스포츠파크 확대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창녕군 (문화체육과)	조건부
2014-08-03	함양군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함양군 (문화관광과)	조건부
2014-08-04	남해군 관광개발분야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남해군 (문화관광과)	조건부
2014-08-05	욕지섬 관광용 모노레일 설치사업 기본조사 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통영시 (농업기술과)	조건부
2014-08-06	양산시 수질정화공원 에너지자립화사업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양산시 (하수과)	조건부
2014-08-07	합천군 재해복구사업(2012년) 분석·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합천군 (건설방재과)	조건부
2014-08-08	합천군 이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합천군 (건설방재과)	조건부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담당
(055)211-4626

계약심사 현황

(단위:백만원)

기 간	분 야	건수	심사현황			비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2014년 7월	계	39	47,993	45,000	2,993	6.24%	
	공사	토목	17	39,077	36,575	2,502	6.40%
		건축	4	2,363	2,305	58	2.46%
		기타	5	2,102	1,928	174	8.28%
	용역	8	3,819	3,589	230	6.02%	
물품	5	632	603	29	4.58%		

■ 자료 : 도 회계과 계약심사담당
(055)211-3548

2014년 국가기술자자격 검정시행일정

회별	회별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필기시험 합격자결정 (방문제출)	실기(면접) 시험	합격자 발표
		인 터 넷			·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 (인 터 넷)		
기술사	제103회	4.4~4.10	5.11	6.27	6.30~7.3	7.26~8.8	8.22
	제104회	6.27~7.3	8.3	9.19	9.22~9.25	10.18~10.30	11.14
기사 (산업기사)	제2회	4.18~4.24	5.25	6.5	6.9~6.12	7.5~7.18	8.22
	제3회	7.25~7.31	8.17	8.29	9.1~9.4	10.4~10.17	11.14
	제4회	8.22~8.28	9.20	10.2	10.6~10.10 (10.9 제외)	11.1~11.14	12.12

■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 안내

- 관련 법 :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 입력대상 용역 : 설계, 감리, CM 등 공공분야의 건설기술용역
- 입력시기 : 용역의 계약체결 후, 설계 변경 후, 준공 후 10일 이내 기술자 변경시 수시 입력
- 시스템 사용자 :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사업관리담당자
용역사 대표자 및 용역책임자(원도급·하도급)
- 시스템 접속 URL : <http://211.53.241.200>
- 참고 :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되는 '14. 5.23. 이후는 본 시스템을 통하여만 건설기술 용역에 대한 실적 관리 및 확인 가능함.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팀당
(055)211-4626

위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http://www.gsnd.net>(실국홈페이지) 및
경상남도 건설정보 <http://gncl.gsnd.net>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재 신청 건설관련 자료 및 원고도 받습니다.

TEL : (055)211-4623~6

FAX : (055)211-4619

e-mail : babyhye@korea.kr

이 자료는 업무 참고용입니다.